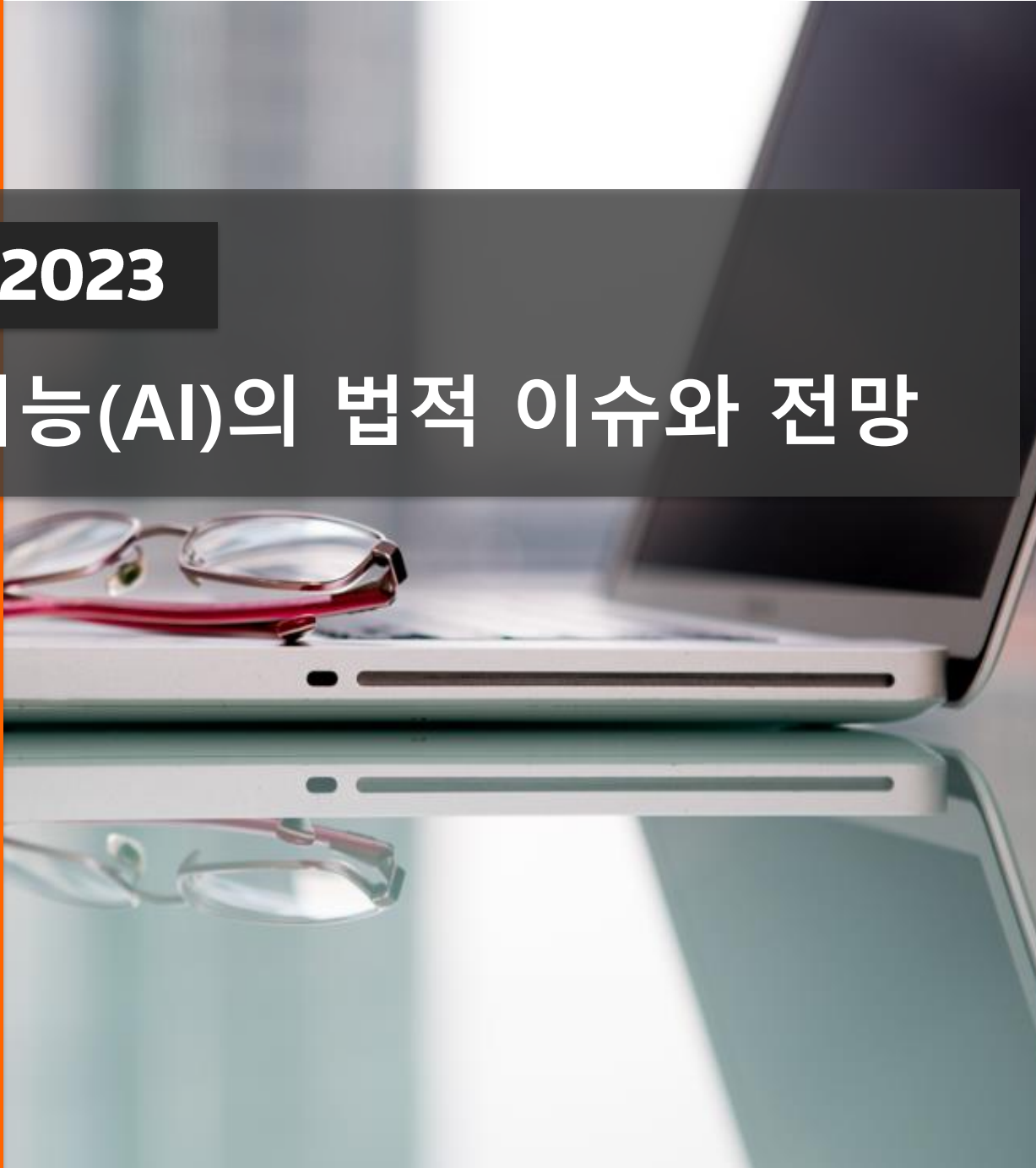


2022-2023

#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투스론티터코리아 로앤비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학회논문] 및 [E-BOOK] 콘텐츠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LAWnB IP Exclusive Report:

#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OpenAI 가 개발한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ChatGPT 를 포함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사전 학습하여 사용자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전달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색엔진 시장은 물론 기존 포털 사이트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기존에 만들어진 창작물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고,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에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거짓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AI) 관련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혹은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LAWnB IP Exclusive Report 에 포함된 콘텐츠는 로앤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를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재를 동의해 주신 각 로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톰슨로이터코리아 로앤비

### 정보제공 동의 로펌 (가나다순)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올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4

LAWnB IP Exclusive Report: Legal Issues and Outl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2022-2023  
Thomson Reuters, LAWnB  
www.lawnb.com



# Table of Contents

## LAWnB IP Exclusive Report: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초거대 AI 모델 관련 법적 이슈 .....	4
인권위,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10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13
법의 결정성, 인공지능 그리고 법관의 미래 .....	15
'알고리즘의 지배'와 '법의 지배'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	16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	17
AI 에 의한 특허침해의 제문제 .....	18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	19

# 초거대 AI 모델 관련 법적 이슈

법무법인(유) 화우

이광욱, 이근우, 권은구

2023. 2. 13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 초거대 AI 모델 관련 법적 이슈

“OpenAI 가 출시한 ChatGPT 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분쟁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과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 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 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초거대 AI 모델 및 그 생성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중심으로 -

2022. 11. 30. ChatGPT 가 출시된 지 2 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후에 한단계 더 진화되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요청하면 기계가 쓴 것이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글까지 생성해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초거대 AI 모델과 그 생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몇몇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ChatGPT 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기술혁신이 있고 반면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미국 집단 소송에서는 어떤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본 후, 향후 시사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 1. 배경

2022. 11. OpenAI 가 ChatGPT 를 출시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5 일만에 100 만명이 사용하는 기록을 세우고, Similarweb 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 1. 하루당 평균 접속자 수는 1,300 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검색 엔진을 대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이메일이나 블로그 글과 같은 일상적인 글뿐만 아니라 심화된 주제의 논문까지도 전문가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해줍니다. 특정 기능이나 목적을 알려주면 그에 맞는 소스코드까지 직접 작성해주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고 싶은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ChatGPT 를 사용하면서 ChatGPT 와 같은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글이나 소스코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 로 작성되는 글이나 소스코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자동 생성된다고 알려질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생성된 출력물에는 별도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 창작물에 대한 표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논란이 현실화되어, 2022. 11. OpenAI 의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하여 출시된 서비스 Copilot 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Copilot 은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내놓은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ChatGPT 가 기능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희망하는 소스 코드 요청 내용에 기반하여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Copilot 은 전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장소로 알려진 GitHub 의 소스코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출력물을 생성하면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사항이 생략된 채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원 창작자는 OpenAI, GitHub, Microsoft 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시작된 위 소송은 ChatGPT 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의 출력물에 대하여 여러 업계가 제기하는 표절 논란을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용자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2. 초거대 AI 모델의 기술 혁신과 논란의 요소

### 가. 대형 언어 모델의 진화로 탄생한 초거대 AI 모델

OpenAI 가 출시한 ChatGPT 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OpenAI 는 2018. 최초 버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부르는 대형 언어 모델을 계속 개량해왔고,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2022. 11. 30.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 를 공개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를 본 딴 것처럼 신경세포 시냅스에 해당하는 '매개변수'가 GPT-1 에서는 약 1억 7,000 개였던 것이 GPT-3 에서는 약 1,000 배에 이르는 1,750 억개로 늘어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ChatGPT 는 그 보다 조금 더 개량된 GPT-3.5 모델에 기반하여 출시하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ChatGPT 는 사용자가 질의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설득력 있는 출력물을 생성해 냅니다. 나아가 질의 또는 요청한 사항의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이 마치 사람이 내놓은 것처럼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영문에 기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전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함이 증가한다는 한계,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OpenAI 는 ChatGPT 의 기반이 된 지금의 GPT 모델로 개량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570GB 의 문자 데이터, 3 조개의 단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OpenAI 의 GPT 모델이 학습한 문자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웹사이트 게시물, 위키피디아, 뉴스기사에서 확보한 공개 자료들입니다.

OpenAI 는 GPT 모델에 기반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즉 소스 코드에 특화된 Codex 모델도 개발하였는데, 그 Codex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GitHub 의 공개 소스 코드 저장소(Repository)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GitHub 저장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소스 코드가 공유되는 대표적인 곳이므로, Copilot 의 Codex 모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세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거의 모두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논란

Chat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ChatGPT가 생성한 출력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출력물의 이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별도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력물 그 자체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각계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로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계나 학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과제 대필 행위를 우려하여 ChatGPT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연구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논문 작업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표절과 다를 바 없는 '과학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ChatGPT가 생성한 출력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출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출력물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ChatGPT가 와튼 스쿨 MBA 시험에 합격하였다거나 미국 의사 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USMLE')을 통과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 그럴싸한 답변으로 맞는 답인 것처럼 보일 뿐 그 실체는 부정확하다고 확인된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네이버 지식인 격인 Stack Overflow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정확한 답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 사용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ChatGPT의 출력물을 답변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ChatGPT를 개발한 Open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미국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 사실을 지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의 초거대 AI에 대한 논란

OpenAI의 GPT 모델로 생성된 출력물에 근거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 표시가 없다는 점은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ChatGPT가 출시되기 전, OpenAI가 2021. GPT 모델에 기반하여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Copilot'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OpenAI가 Copilot 서비스를 위하여 GitHub 공개 저장소의 소스코드로 GPT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밝히면서, 해당 공개 저장소를 각자의 창작물들에 대한 대표적인 공유의 장으로 삼았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타인이 공개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의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자신이 이용한 타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표시를 유지하거나,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신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라이선스 양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려는 원 소스 코드의 출처와 그에 따른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무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GPT 모델의 출력물이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결과 도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우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의 방식대로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면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을 것이나, GPT 모델의 출력물은 그 출력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소스코드의 출처, 저작권, 라이선스 표시 없이 새로운 창작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 주된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OpenAI, GitHub 측은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 업계 공개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OpenAI 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 행위는 공정 이용 법리에 부합하고,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고 보편적인 경제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Copilot 출시 이후 갑론을박은 지속되었고, 결국 2022. 11. GitHub 공개 저장소의 소스 코드 원 작성자들은 GitHub, OpenAI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초거대 AI 모델에 대하여 제기된 미국 집단 소송의 개요

미국 집단 소송은 프로그래머이자 미국 변호사인 매튜 버트릭(Matthew Butterick)이 주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작성자들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회사에는 Copilot 서비스를 출시한 GitHub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관여한 OpenAI 및 그 계열사, GitHub 의 모회사인 Microsoft 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2022. 11.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의 주된 청구 원인은 (i)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ii)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불법적 간섭,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원산지 허위 표기에 따른 상표법 위반, 부당 이득 수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행위는 분명합니다. Copilot 동작의 기반이 된 초거대 AI 모델은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학습이 이뤄졌고,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출력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출력물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의무사항 준수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서는 해당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아래와 같이 각 청구 원인에 따른 위법을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위반

DMCA 제 1201 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우회할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제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제 1202 조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고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17 U.S. Code § 1201 -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1) (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

(2) No person shall 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or part thereof, that—

(A)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17 U.S. Code § 1202 - Integr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

(b)Removal or Alteration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No person shall,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owner or the law—

(1)intentionally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

원고는 Copilot 의 초거대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출처,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 관리 정보(CMI)'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그 저작권 관리 정보가 삭제된 채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행위는 DMCA 제 1201 조 및 제 1202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②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 시 특정 라이선스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소한 출처(attribution),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 라이선스 고지의 의무사항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MIT 라이선스에 따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위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아래 MIT 라이선스 조건 참조). 원고는 Copilot 의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합니다.

### The MIT License

Copyright <YEAR> <COPYRIGHT HOLDER>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 4. 시사점

OpenAI 의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Copilot 뿐만 아니라 ChatGPT 까지 출시되면서 기계 학습에 따른 인공지능의 효용성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였다고 보입니다. 알파고 이후로 AI 업계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대화형 인공지능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특정 업계의 전문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기존의 글 쓰기는 쉬워지고 편해졌습니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녹여내서 하나의 글에 담아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요청하면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글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이 출력한 그대로 써도 될 만큼 문맥, 문장 구조와 논리를 갖추어서 특별히 수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기반하여 그러한 출력물을 생성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초거대 AI 모델로 제시된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한 형태로 출력물을 생성할 뿐, 기존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던 방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초거대 AI 모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나, 학계, 교육계 등에서 제기되는 표절 우려 등을 포함한 여러 논란을 계속하여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규범으로 자리잡은 방식과 다르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그 충돌이 심화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벌어진 사태처럼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의 방어 논리인 '공정 이용' 주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없고, 나아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연구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초거대 AI 모델이 거듭 개량된 결과 이제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넘어 유료 서비스로 출시되어 상업적 수단이 되고,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기존의 창작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공지능 학습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 없고, 개별 사안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거대 AI 모델의 출력물은 인터넷에서 공개된 자료를 학습한 결과물이므로, 그 출력물과 원 자료 간의 유사한 정도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설명자료에서도,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출력물이 기존의 소스 코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의 기존 자료와의 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사용을 희망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집단 소송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만의 특유한 규범으로 인해 초거대 AI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사례에 비하여 조금 더 일찍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분쟁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과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에 맞는 규범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향후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 있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 인권위,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법무법인(유) 화우

이근우, 황규호, 여현동, 황희경, 이광욱

2022. 5. 19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 인권위, 인공지능(AI) 개발 및 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위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관련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기에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문제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준수와 관련된 전에 없던 법적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큼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2016 년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치루어졌던 알파고 대 이세돌 바둑경기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IT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증폭과 더불어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도덕적·윤리적 논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기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 등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의 편리함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해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5. 17.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에게 이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배경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배경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제품 및 서비스들이 고용·금융·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시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인권문제 또한 다양한 국면으로 발생하여 계속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EU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및 OECD 인공지능 권고안 등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해 별다른 선택권이 없고, 의견 제시도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권 관련 문제가 있어도 개별 부처의 단편적 해결책 제시로 끝날 뿐,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방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5. 17.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이행 및 관계 법령 제·개정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및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를 따르도록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5. 3. 발표된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 대 국정과제에 의하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국정과제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어 추진될 계획이기에, 해당 기술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주목해야 하고, 그 관련 정책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 가이드라인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에서 논하는 인공지능은 우선 학습과 추론, 판단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해당 프로세스를 의미하나, 더 나아가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을 기능하게 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에 따라 ① 투명성의 확보 및 설명의무 준수,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③ 차별 금지, ④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⑤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①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알 권리 및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공지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과 그 결과가 적절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 공개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공개하고 관련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부분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권리, 개인정보 접근 및 열람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는 인공지능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관 등을 하는지에 대해 통지받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③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사람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의 요소에 따라 편향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개발 당시부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및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차별적 요소가 배제될 수 있어야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편향적·차별적 판단 결과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인공지능의 특성, 상황, 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 및 국제 지침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대중에 공개되어야 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 대상인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요구되고, 전문가 육성 및 평가 기준의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국가는 각종 산업 등에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인공지능이 얼마나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위험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규제 마련 및 인적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 등을 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공지능 개발자 및 운영자는 관련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구제할 방법을 마련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노동 시장 충격 완화 등을 위해 법적·정책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3. 시사점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신용정보원은 국내 금융 인공지능 시장이 4년 뒤 3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위 가이드라인의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관련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는 않았기에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문제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준수와 관련된 전에 없던 법적 쟁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진흥을 포함한 기본법 성격의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동향 및 시행 후 집행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논의가 있다면 다음 콘텐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법무법인(유한) 바른

박상오

2022. 4. 19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또는 대체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창작은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

하지만 저작권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아직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법령하에서 인공지능이 위 규정에 따른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산업 분야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업무들이 빠르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또는 대체되더라도 아주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창작'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창작은 이미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

하지만 저작권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아직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지 않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제 2 조 제 1 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특정 알고리즘'에 기초해 산출해 낸 결과물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저작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저작자'도 사람(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여야 하므로, 현행 법령하에서 인공지능이 위 규정에 따른 저작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보아 인공지능을 통해 창작이 이뤄지도록 한 주관자 등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역시 최근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당 사안에서 인공지능은 개발자의 관여 없이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작품을 창작했고, 위 인공지능을 개발한 박사는 위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로 등록하는 내용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2 월 14 일 사람(human being)이 위 작품을 창작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거절했다. 이는 미국 특허청이나 유럽 특허청 등에서 인공지능의 특허 출원을 거절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한 박사 역시 위 작품이 인간 작가(human author)의 기여로 창작된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았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인공지능이 이미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의 창작'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고, '인간'에 의한 창작 요건을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도 있다(예컨대, 기계의 오작동 등 우연적 결과물에 대해서까지도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할지 모른다).

인간과 문화·예술의 가치 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와 사회의 방향성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입법 등이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법의 결정성, 인공지능 그리고 법관의 미래

## Legal Determinac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Judges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연구 <32-2>

권경휘 (Kyung-hwi Kwon)

2022 년 06 월

### ● 초록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학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법률가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의 결정성에 대하여 경쟁해오던 견해들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와 연관시켜 세 가지의 견해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실제 어느 한 학자나 어느 한 학파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주장의 주제와 착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하여 이 글은 한 학자 내지 학파의 주장에 대한 주석적인 검토보다는 그러한 입장을 극대화해보았을 때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려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견해는 각각 '통속적 견해', '통사론적 견해', '통계론적 견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각각의 견해는 법관이 법을 사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법관과 인공지능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이들 각각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알고리즘의 지배’와 ‘법의 지배’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A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Rule of Algorithm’ and ‘the Rule of Law’

법과사회이론학회 / 법과 사회 <71-0>

남중권 (Nam Joong-kweon)

2022 년 10 월

## ● 초록

‘법의 지배’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논쟁적인 개념인 것처럼 ‘알고리즘’, 나아가 ‘알고리즘의 지배’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생소하기까지 한 개념이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대중적인 질문이 갖는 인공지능의 성급한 의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인공지능 시스템의 작동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과 사회의 체계로서 ‘법’을 질문의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에 대치시키고, 오랜 역사를 갖는 ‘법의 지배’ 관념에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으로 ‘알고리즘의 지배’를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는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인간에 의한 자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관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입’을 요건으로 하는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는 한편으로는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의 반작용으로 ‘인간 중심주의’적 측면이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알고리즘의 지배’ 현상이 이를 염두에 두지 못했던 기존의 ‘법의 지배’ 관념을 흔들어 인간과 기계(알고리즘적 시스템)가 공존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인 관념으로 새롭게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적 해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의 지배’에 담겨 있는 ‘특수하고 자의적인 결정의 일반화에 대한 불신’은 법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었든 법을 생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논리와 지식에 대한 성찰적인 비판과 재귀적인 의문을 요구하는 관념으로 재구축될 수 있다. 복잡한 과학기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국제적·국내적·정책의 변화에 따라 유행하는 개념을 쫓아 ‘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빠르게 정리하고 다듬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미래 또는 법학의 미래가 될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논의를 자생적으로 펼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ivil litig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안암법학회 / 안암법학 <64-0>

강영주 (Kang Youngju)

2022년 5월

## ● 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을 민사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접목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는 사법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을 민사소송에 활용함으로써 비대면 사법 절차를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관 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감소시키고 재판 비용을 절감시키는 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판례와 같은 데이터를 대폭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어떻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당사자의 사적 자치 원칙이 중요시되는 민사 분야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도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재판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조정과 중재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의 경우 챗봇이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중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액사건 해결에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의되는 바, 여기에 전자증거개시제도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사분쟁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분쟁 해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또한 법정정보기술산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그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AI에 의한 특허침해의 제문제

## The Problems of Paten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집 <27-2>

이상미 (Sang Mi Lee)

2022년 12월

### ● 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술적 복잡성, 자율성, 그리고 대량의 기술 데이터에 기반한 진화 능력은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발 당시에는 특허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던 AI 일지라도 외부 데이터의 학습과 내부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침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AI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진화로 인한 특허침해의 책임은 AI의 사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또한 AI가 실행되기까지 개발, 학습, 데이터의 공급, 서버 제공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였다면, 전통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책임의 주체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의 의한 특허침해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특허법상 문제들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BOOK

#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저자: 양종모

2021.03.31

## ● 요약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기술의 한계와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률 자문, 계약 검토, 분쟁 예측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 추적 등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법률적인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대응(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E-BOOK - 인공지능과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 바로가기

\* 상세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LAWnB Legal Essential Report Vol.14

## LAWnB IP Exclusive Report:

###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투스론로이터코리아, 로앤비

2023.02.28

---

**COPYRIGHT©LAWNB,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2022-2023 인공지능(AI)의 법적 이슈와 전망 LAWnB IP Exclusive Report 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학회논문] 및 [E-BOOK] 콘텐츠를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펌리포트는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